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특정제품(고강도네트)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미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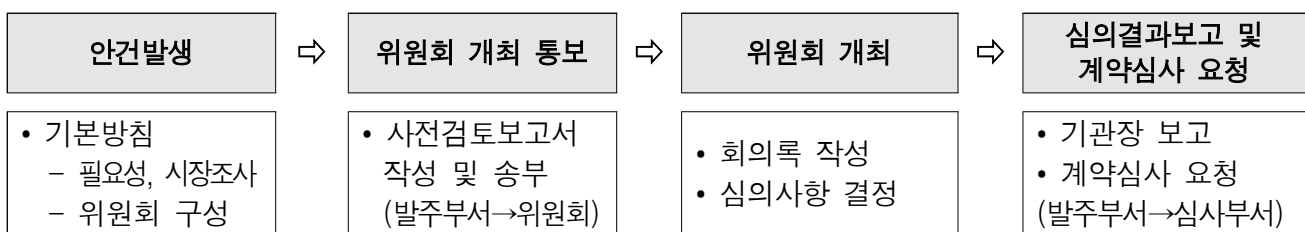
관 계 기 관 종로구(공원녹지과)

내 용

종로구(공원녹지과)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동 산2-1호 일대에 예방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16.10.24. I기업과 설계용역계약(금17,602천원) 및 '17.2.28. J기업과 공사계약(금209,417천원)을 체결하여 '2017년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을 '17.3.8. 착공 및 '17.6.5. 준공하였다.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요령(행정1부시장 방침 제559호, 2009.11.12.)' Ⅱ.3.(위원회 개최 대상사업)에 따르면 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특정제품의 재료원가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순공사원가⁷⁾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가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경우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⁸⁾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표〕 특정제품 선정심사 운영절차도



따라서 공사발주자는 일정금액 이상의 제품이나 전문공사가 수반되는 건설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다수 업체를 시장 조사하여 상호 비교·검토 후 위원회에 검토의견 및 대안을 제시하고, 위원회에서는 제시된 안전에 대해 가격의 적정성, 구매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제품(공법, 기술)이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순공사원가 :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의 합을 말함

8) 위원장 포함 5~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실·본부의 국장, 위원은 5급(과장), 6급(팀장)으로 함(외부전문가 위촉 가능)

※ 공사발주자의 추천안이 채택된 경우 : ‘원안채택’ 또는 지적사항 보완조건으로 ‘조건부 채택’
추천안 이외의 대안이 채택된 경우 : ‘제0안 채택’

그런데 종로구(공원녹지과)에서는 위 산사태취약지역의 계류(溪流) 상류구간에 토석류의 흐름을 차단하는 방재시설(횡공작물)을 ‘고강도 유연성 네트(너비 12m, 높이 3m)’ 제품으로 설계하면서, 제품의 재료원가가 54,941천원임에도 특정제품 선정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동 고강도 유연성 네트의 제품 세부내역을 조사한 결과, 일본에 본사를 두고 국내(경기도 ◎◎시)에 지점을 둔 방재업체인 K기업에서 출시한 울타리 제품으로 일본 건설신기술활용시스템(NETIS)에 등재되었던 바 있으나, 동 시설물 설치시점인 2017년 6월에는 그 효력이 상실('17.4.20.)되어 현재 일본 건설신기술 목록에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인근의 종로구 ☆☆동 산1-1호일대에 실시한 ‘2017년 예방 사방사업’에서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횡공작물인 ‘▲▲▲’가 고강도 유연성네트의 재료원가인 54,941천원보다 30,990천원 저렴한 23,951천원에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림〕 횡공작물 설치현황



그 결과 특정제품이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경제성이나 성능에서의 우수성이 입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사과정 없이 그대로 설치되어 특혜소지의 우려 및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이에 대해 종로구(공원녹지과)에서는 서울시 설계심의 결과에 따라 횡공작물을 ‘고강도 유연성 네트’로 설치한 것이며, 동 제품은 일본 건설신기술로서의 효력 상실 여부와는 별도로 국내에서 특허출원을 받은 제품이므로 성능에 대한 우수성은 검증된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설치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발주에 적용된 특허는 사방사업의 횡공작물에 적용되는 기술(사방댐, 사방네트)로 국내 유사 특허가 25건(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2017년 6월 기준 : 25건)이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타 특허에 비해 성능이 뛰어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특허출원을 받은 제품이므로 성능에 대한 우수성이 검증되어 설치하게 되었다’는 변명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특정제품의 재료원가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특정 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주의)